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9다205220(본소), 2019다205237(반소) 판결 [사업 권매매
대금청구의 소,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박상도, 박성철, 송대한, 좌세준, 허경모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1. C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2. D

판 결 선 고 2020. 11. 5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나2004329(본소), 2018나 2004336(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 D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D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이 이 사건 사업권 매매계약에 따른 명의인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상 권리·의무의 승계,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D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D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